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1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강명구 · 구자근 · 이종배
엄태영 · 김용태 · 김미애
성일종 · 조은희 · 김정재
서천호 · 정동만 · 임종득
이성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꽂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 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누구든지 담배꽂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누구든지 담배꽂초 등 하수 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 나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0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제80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하 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 기하거나 배출한 자</u>
<u>1. ~ 6.</u> (생 략)	<u>2. ~ 7.</u>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